

제안 설명서

(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

- 의안번호 제212번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본 개정조례안은
 - 지방분권 여건성숙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 간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,
 - 3,000 m^2 이하 시장, 문화시설 및 소공원·어린이공원 등 소규모 시설에 대한 자치구 결정권한을 확대하고, 입체·복합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규정 마련 및 상위법 용어변경 등으로 현행 규정과 여건에 맞지 않는 위임기준 등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.
 - 또한, 市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 시 자치구청장의 발언권을 시장의 사전승인 절차 없이 보장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.
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,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-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2018. 12. 18.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